

'2024

당진 사랑마루 이용계약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2·3·4·5·인지등급 이용자, 또는 일반입소자에 대해서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당진사랑마루요양센터의 입소 정원은 24명으로 한다(2024. 02. 01 개정).

제 3 조 (이용정원에 관한 특례)

1.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미이용자가 발생한 경우, 미이용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미이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어르신(이하“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어르신의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소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입소를 신청할 경우 특례입소자로 입소할 수 있다.

제 4 조 (모집 방법)

1. 모집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등급 1.2.3.4.5등급 및 인지등급 판정받은 어르신과 등급외 이용자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 및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하며, 입소신청서를 받는다.
3. 이용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출한다. 단, 등급외 이용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신체구속 금지)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이 타 어르신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의 신원인수에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어르신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어르신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 ③ 어르신의 면회 및 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어르신의 서비스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어르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어르신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어르신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④ 어르신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7 조 (이용료 변경방법)

1.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한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으로 비용의 변경시 내용을 고지한다.
3.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는 양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 8 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 11 조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평일07:30~20:00와 일요일09:00~18:00로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 12 조 (입소 · 이용료 납부)

1.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01-0077-7795-01 김종진: 당진사랑마루)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재가급여(월한도액) 2020.1.1., 2021.1.1, 2022.1.1., 2023.1.1., 2024.1.1. 개정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요양급여	재가기관 기본수가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비급여	기저귀 등 생활용품	실비					
	식재료비 (1식)	3,500원					
	간식비 (1회)	500원					
	이/미용료 등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어르신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경감자(건강보험료 순위 25%~50%)	12%	15%
경감자(건강보험료 순위 0%~25%)	8%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9%, 7.5%,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르신이 부담한다.
다만,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별표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1. 3시간이상~6시간미만 32,470
2. 6시간이상~8시간미만 44,070
3. 8시간이상~10시간미만 55,210
4.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61,000
5. 13시간초과 65,540

[별표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 13 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 14 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15 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 16 조 (미이용비용 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 17 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 18 조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시설관리)

- ① ‘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20 조 (건강관리)

-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24 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5 조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27 조 (기타 :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입소생활 내용 및 사진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사진활용 : ☒ 보호자 소식지 ☒ 행사용 동영상 ☒ 홈페이지 게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보존)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의 이용기간은 급여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이 용 자 : (인)

보 호 자 : (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동의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동의

1.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관리, 방범, 화재예방, 사고발생에 대한 정보로만 사용한다.

2. 설치장소 : 현관, 거실, 복도, 생활실, 업무공간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은 제외됨)

3. 촬영방법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4. 처리방법 :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

5. CCTV 열람 대상 : CCTV 녹화영상에 동의한 입소어르신 또는 법적보호자(신분증 확인 필요)

6. CCTV 열람 절차 :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확인을 위해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지정장소 외 열람은 불가능하며, CCTV 녹화영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없음)

2024년 월 일

사용자 당진 사랑마루요양센터 대표

입소자 이름 (印)

보호자
(대리인) 이름 (印)